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9676

제안연월일: 2025. 4. .

제 안 자: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 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212호)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2025. 1. 2.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5 차 전체회의(2025.3.31.) 상 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소위회부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3.3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 영폐기)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471호)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2025. 3. 31.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5 차 전체회의(2025.3.31.) 상 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소위회부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3.3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 영폐기)	

- 가.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3. 31.)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나.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4. 9.)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제1소위원

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수정의견을 반영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재판관 임명에 있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지연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헌법재판소 2 025. 2. 27. 선고 2025헌라1 결정)에서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대통령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게 부여한 헌법 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 나.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하여는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봄(안제6조제2항 신설).
- 다.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 국회에서의 선출일과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③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직전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	
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	
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u><단서 신설></u>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
	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
	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
	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u><신 설></u>	② 제1항 후단의 경우 국회에
	서의 선출일과 대법원장의 지
	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
	을 임명하여야 한다. 7일을 경
	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u> 것으로 본다.</u>
<u>②</u> ~ <u>④</u> (생 략)	$\underline{3} \sim \underline{5}$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	<u>⑥</u> 제4항 및 제5항
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② (생략)

<신 설>

•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